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233

발의연월일: 2021. 8. 25.

발 의 자:김영배·김영진·이형석

박재호 • 양기대 • 고용진

백혜련 · 김경협 · 오영환

우원식 · 김주영 · 김민철

김수흥 · 김진표 · 서영교

홍영표 • 이해식 • 정일영

박완주 • 한병도 • 김성주

오영훈 · 임호선 · 양경숙

의원(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지역의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음.

이를 위하여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25.3%로 단계적(2022년 23. 7%, 2023년 25.3%)으로 인상하고(안 제69조),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1조제3항제4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2230호),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32호), 이형석의원이대표발의한「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28호), 양기대의원이 대표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 중 "100분의 21"을 "1천분의 253"으로 한다.

제71조제3항제1호 중 "100분의 21 중 5"를 "세액의 253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21 중 6"을 "세액의 253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분의 21 중 10"을 "세액의 253분의 100"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43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 가. 납입관리자는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한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 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 나. 가목에 따라 보전하는 시·도 전환사업의 총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항제1호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지방재정법」 제 29조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 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의 100분의 6 0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고, 나머지 100분의 40은 지역별 소비지출·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제71조제3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 진다.

- 제3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69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적용한다.
- 제4조(지방소비세의 세액에 관한 특례) 제69조제2항 및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69조제1항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37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제71조제3항제1호의 253분의 50은 237분의 50으로, 제2호의 253분의 60은 237분의 60으로, 제3호의 253분의 100은 237분의 100으로, 제4호의 253분의 43은 237분의 27로 한다.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를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생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	2
의 과세표준에 <u>100분의 21</u> 을	<u>1</u> 천분의 <u>253</u>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	
다.	
제71조(납입) ①・② (생 략)	제71조(납입) ①・② (현행과 같
	<u> </u>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3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	
다.	
1.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
<u>100분의 21 중 5</u> 에 해당하는	<u>세액의 253분의 50</u>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	
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2.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2
100분의 21 중 6에 해당하는	세액의 253분의 60

부분은 법률 제12118호 지방 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 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재 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 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 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3.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3. 100분의 21 중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 다. (생 략)

<신 설>

3.	
	<u>세액의 253분의 100</u>
	가. ~ 다. (현행과 같음)
<u>4.</u>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43에 해당하
	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
	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납입관리자는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한
	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은
	<u>납입 받은 세액을 「지방</u>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나. 가목에 따라 보전하는 시·도 전환사업의 총비용 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항 제1호에 따라 안분하여 산 정한 「지방재정법」 제29 조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 금(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제29조의 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 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 제11조제2항 및 「세 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 항에 따른 시·도 교육비특 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의 장과 특별<u>시·광역시·</u>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 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

④ (생 략)

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제71조제3항제3호가
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

여 납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의 100분의 60은 지역별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고, 나머지 100분의 40은지역별 소비지출·인구수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무별자치도지사·시장·근수및 구청장에게안분하여납입한다.